

군산시 공고 제2020-1207호

군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「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0년 6월 일

군 산 시 장

군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따른 법률상담관의 상담수당을 현실화하여 법률상담실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법률상담관에 대한 상담수당 지급 근거규정 마련

3. 의견제출

군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6월 2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(참조: 기획예산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1)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- 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나. 의견제출할 곳 : 우) 54078 군산시 시청로 17
 군산시청 기획예산과(전화 : 063-454-2344, FAX : 063-452-8157)
- 다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
- 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
 전화 063-454-2344,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마. 군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: 붙임참고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군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○ 성 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 (연락이 가능한 휴대폰, 자택, 사무실 등)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군산시 조례 제 호

군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군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의 제목 “(여비)”를 “(수당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여비를”을 “상담수당 및 여비 등을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여비) 공무원이 아닌 법률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 서 <u>여비</u> 를 지급할 수 있다.	제11조(수당) ----- ----- <u>상담수</u> <u>당 및 여비 등을</u> ----- -----.

군산시 공고 제2020 - 1214호

동부·서부 어민복지회관 사용자 제안공고

동부·서부 어민복지회관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자료 제출 및 선정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 06. 01.

군 산 시 장

1. 사업개요

가. 재 산 명 : 동부 어민복지회관, 서부 어민복지회관

나. 사업대상

재산의 표시	건물	사용용도	사용허가 기간	비고
동부어민회관 (경암동 133외 4필지)	1동 4층 연면적(768.49㎡)	다목적회의실 사무실 등	허가일로부터 2년	
서부어민회관 (해망동 1011-19)	2동 1층 연면적(79.86㎡/156.79㎡)	다목적회의실 사무실 등	허가일로부터 2년	

※ 입찰자는 아래 내용을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, 모든 사항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귀속됩니다.

1. 현장 설명은 따로 실시하지 않습니다.
2. 본 입찰 건의 공유재산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.

2. 참가자격

가. 일반자격

- 1) 『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서 규정한 주변지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어민단체
- 2) 행정청(전라북도청, 군산시청 등),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인가 또는 등록된 어민단체
- 3) 상기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함

3. 제안서 제출 및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

- 가. 접 수 일 : 2020. 06. 15. 09:00~18:00까지
- 나. 접 수 처 : 전북 군산시 시청로17, 군산시청 항만해양과(6층)
- 다. 접수방법 : 직접 방문접수(기타 방법에 의한 접수는 하지 않음)
- 라. 제출서류 : 제안요청서 참고
- 마. 제안서 평가 및 단체선정 : 제안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
- 바. 선정방법 : 우리시 내부 심의에 의한 선정

4. 기타사항

- 가.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입찰자는 제안서 작성지침 등 제안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- 다. 공유재산 사용 중 발생하는 각종 법률, 규정, 지침, 민원 등에 의거 공유재산 사용이 불가한 경우 우리시에 법적인 책임 및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.
- 라. 사용 신청자는 신청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, 제안서 평가내용도 공개하지 않습니다.
- 마. 대리인이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위임장,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

여권에 한함)을 지참·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그 밖에 제출 관련 서류는 제안요청서에 의함

바.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르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.

사.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 항만해양과(T.063-454-478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붙임 제안서요청서 활용 작성

붙임 제안 요청서 1부. 끝.

2020년도

제 안 요 청 서

- 동부·서부 어민복지회관 사용허가 -

시민이 함께하는
자립도시 **군산**

군 산 시
항 만 해 양 과

|| 목 차 ||

I. 제안서 작성 지침

1. 제안서 형식	2
2. 제안서 인쇄 형식	2
3.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	2

II. 공유재산 사용자 선정방법

1. 기본원칙	4
2. 제안서 평가방법	4
3. 제안서 제출방법	4
4.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처	4
5. 기타사항	4

【별지서식】

- 1. 【별지 제 1호】 입찰참가 신청서
- 2. 【별지 제 2호】 서약서
- 2. 【별지 제 3호】 위임장

I . 제안서 작성지침

1. 제안서 형식

- 작성 내용(제출부수 10부)

1장 공유재산 사용 목적 및 계획
 2장 공유재산 유지보수 계획

- 제안서의 형식
 - 구성형식(활자크기 : 12포인트 이상)

장 : 1.1, 2.1, 3.1 → (16포인트/휴먼명조/진하게)
 절 : 1.1.1 → (15포인트/휴먼명조/진하게)
 항목 : 1) → (이하, 12포인트/휴먼명조)
 가) -----
 (1) -----
 (가) -----
 ① -----

- 공유재산 사용 계획서의 본문내용은 쪽수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제출

2. 제안서의 인쇄형식

- 제안서 규격 : A4용지(210mm x 297mm)
- 인 쇄 방 법 : 컴퓨터 조판 인쇄(국문)(단면, 양면 인쇄 가능)

3.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

- 제안서는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, 제출한다.
- 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.
-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 시 추가할 수 있다.
-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, “가능하다”, “동의한다”, “~ 본다”, “할 수도 있다”, “고려하고 있다” 등의 표현은

사용하지 말아야 한다.

-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,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등은 첨부하여야 하며,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.
-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안요청서,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제안에 참여하여야 하며,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.
-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한다.
-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,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.

Ⅱ. 공유재산 사용자 선정방법

1. 기본원칙

- 제안서의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, 세부평가 기준 등 평가 관련 자료 및 평가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고, 제안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.

2. 제안서 평가 방법

- 제안서 평가시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 원본을 기준으로 평가한다.
-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(허위사실)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.

3. 제안서 제출 방법

- 제안서의 제출은 신청단체 공식 문서로 제출(직접 방문 제출) - 우편접수는 불가
(연락처 명기 : 대표전화)
- 사본 제출 시 '원본 대조필'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.
- 인감 날인이 필요한 부분은 신청단체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및 등록서류로 인정하지 아니함.
- 신청 단체 대표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, 대표자가 아닌 경우는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등록 및 제출 가능함.

3.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처

군산시 향만해양과 ☎ 063-454-4783

4. 기타사항 :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제출공문에 명기된 연락처로 통보함.

[별지 제1호] 입찰참가 신청서

입찰참가 신청서

입찰자	단체명		전화번호	
	주소		주민등록번호	
	대표자			
입찰개요	공고번호			
	입찰건명	동부·서부 어민복지회관 사용자 제안		
대리인 사용인감	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.		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.	
	성명 : 주민등록번호 :	사용인감 (인)		

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시에서 정한 입찰유의사항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.

- 첨부서류 : 1. 인감증명서 1통
 2. 제안서 10부
 3. 행정청에서 인가 또는 등록된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
2020. 06. .

신청인 (인)

군산시장 귀하

[별지 제2호] 서약서

서 약 서

법 인 명 :

주 소 :

군산시 공유재산 “동부·서부 어민복지회관” 사용 목적과 그 제안 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,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.

또한,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시가 결정한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용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.

2020. . .

주민등록번호 :

대표자 성명 : (인)

군산시장 귀하

【별지 제3호】 위임장

위 임 장

_____는 본 위임장으로서_____를 합법적인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본 법인단체를 대리하여 군산시의 「동부·서부 어민복지회관 사용허가」의 제안서 작성 및 제출, 심의 등 일체의 행위를 수행하게 하고자 함.

_____대표_____은 상기 대리인이 본 위임자에 의해 수행하는 또는 수행되게 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 어떠한 조건 없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할 것을 동의함.

본 위임장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그 효력이 종료됨.

20 년 월 일

피 위 임 인 : (서명)

직 위 :

담 체 명 :

위임인(대표자) : (서명)

직 위 :

담 체 명 :

군산시장 귀하